

## [첨부 5]

### 학생 가정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 배송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

아래의 교육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위법함이 없도록함을 확인합니다.

- 교육일자: 2020.06.15.~
- 교육장소: 일동초등학교
- 교육대상(업체 직원)
  - 소속(업체명): 경기롯데
  - 직급: 대표
  - 성명: 한병훈
- 교육내용: 다음과 같음



###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준수 사항

- ※ 위탁자: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(기관 및 학교)
- ※ 수탁자: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(업체)

#### □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

수탁자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 (법 제26조제7항)

#### □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

- 가.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」에 따른 관리적·기술적·물리적 조치 철저
- 나.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
- 다.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금지(법 제26조제5항)
- 라.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
- 마.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하거나 실태를 점검 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함
  -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
-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-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- 목적 외 이용 · 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-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여부
-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#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

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라, 개인정보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변조 ·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·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

##### 가. 관리적 조치

- 내부 관리계획 수립 · 시행(고시 제4조)
  -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위탁 받은 개인정보 관련 모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

##### 나. 기술적 조치

- 접근 권한 관리(고시 제5조)
  - 위탁받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업무 목적 외 불필요한 접근을 최소화하고, 인사이동 발생 시 인가되지 않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범위별로 권한은 차등 부여되어야 하며 퇴사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권한 변경 및 계정 삭제
  - 안전하지 못한 비밀번호를 사용할 경우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
  -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
-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(고시 제6조)
  -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 · 운영하고 인가된 사용자가 정보통신망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보호 대책 마련
  - 개인정보가 저장된 업무용 컴퓨터에 해커 등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상용 침입차단 프로그램 또는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침입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
  -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
  -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는 P2P프로그램 · 공유 폴더 사용 금지

- 개인정보 암호화(고시 제7조)
  - 암호화 대상: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), 비밀번호, 바이오 정보
  -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
-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(고시 제8조)
  - 접속기록 최소 6개월 이상 보관
-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(고시 제9조)
  -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, 자동 또는 일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
-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(고시 제10조)
  -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,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함

#### 다. 물리적 조치

-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(고시 제11조)
  -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전산실·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·운영하고 접근 기록 보관
  -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·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

## [별첨5] 위·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

단계	번호	점검 사항	대상
계약 전	1	위탁자는 위탁할 업무의 개인정보 위험성을 확인하였는가?	김솔
	2	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확인하였는가?	김솔
	3	위탁자는 위탁하여 처리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탁자와 사전 협의 하였는가?	김솔
	4	위·수탁자는 다음 6가지 내용이 포함된 위·수탁 문서를 작성하였는가? ①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②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④ 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※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	김솔 한병훈
	5	만약 위·수탁 업무 종료 후에도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등 추가 처리를 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미리 위·수탁 문서에 이를 포함 하였는가?	
	6	만약 법령상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위·수탁 문서 내에 법률상 근거와 개인정보 보관 기간·목적 등을 명시하였는가?	
업무 수행 중	7	위탁자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는가?	김솔
	8	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가 안전한지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는가?	김솔
	9	수탁자는 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였는가? 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③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·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④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·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⑥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	한병훈
	10	위탁자는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 하였는가?	김솔
	11	위탁자와 수탁자는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파기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였는가?	김솔 한병훈
	12	수탁자는 개인정보 파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였는가?	한병훈
업무 종료 후	13	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를 확인하였는가?	김솔